인터넷 개인방송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도전!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용에 필요한 정보(사업자 등록, 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및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운영자에게는 법령을 위반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 및 침해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1
1.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4
1.1.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4
1.1.1.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4
1.2.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5
1.2.1.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5
1.2.2.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7
1.2.3.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8
2.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11
2.1.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11
2.1.1.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11
2.2.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12
2.2.1.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12
2.3.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15
2.3.1.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15
2.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21
2.4.1.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21
3.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23
3.1.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23
3.1.1.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3.2.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25
3.2.1.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5
3.3.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30
3.3.1.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30

1.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1.1.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1.1.1.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1호 참고).

▪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SOOP(舊 아프리카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방송법」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
>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 비교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융합 미디어(IPTV·OTT) 알아보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호 참고).

OTT 서비스[Over The Top]

▪ "OTT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2호의2 참고).

▪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로는 왓챠·웨이브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등이 OTT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참고).

1.2.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1.2.1.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한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 같은 의미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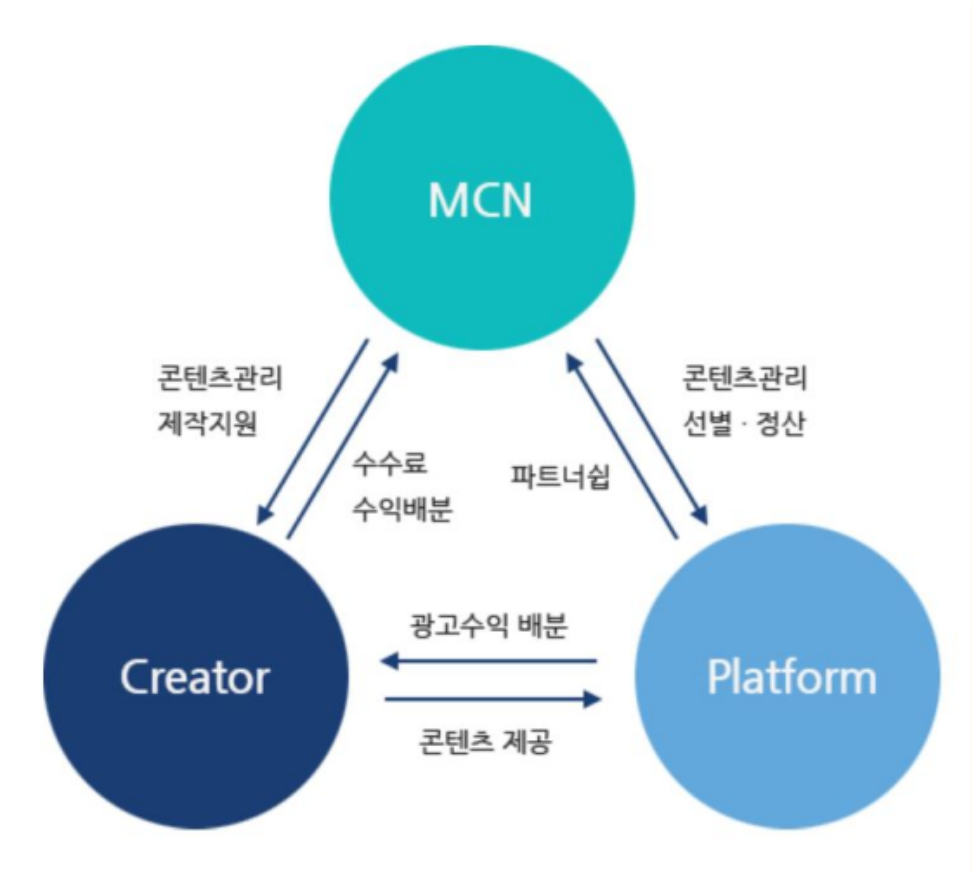
- SOOP(舊 아프리카TV): BJ
- 유튜브: 유튜버·크리에이터
- 카카오TV: PD
- 네이버TV: 크리에이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자(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전문 기획사 MCN이 있습니다.

▪ “MCN(Multi-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이란 콘텐츠의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 관리, 수익 관리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4호).

※ MCN 예시) 샌드박스,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등

※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업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MCN·크리에이터·플랫폼 간의 관계도>

[한국엠씨엔협회 홈페이지(http://kmcna.or.kr)]

1.2.2.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1.2.3.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사업자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사업장 현황 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버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그 밖에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2.1.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2.1.1.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불법·허위조작·유해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허위조작정보>

- 허위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 조작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비교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공적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며, 규제별 담당기관과 규제대상이 다릅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호,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 참고).

공적규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반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①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및 ③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개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또는 방송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약관에 명시된 사항(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포함)을 스스로 규제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가짜뉴스, 유해 게시물 및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관련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종합신고센터(https://www.kiso.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2.2.1.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사전에 저작권 허락 받고 이용하기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고(「저작권법」 제10조제1항),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저작권 이용허락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및 제88조).

>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참고).

-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39조 및 제86조 참고).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 참고).

> ※ 저작재산권 중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해야 할 일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다음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함) 또는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https://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저작권이 침해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저작권이 침해되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처벌

▪ 저작권이 침해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 중단 요청, 민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침해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2제1항·제3항, 제136조제1항·제3항제1호, 제138조제2호 및 「민법」 제741조).

<민사 조치>

- 침해 정지 청구
- 침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 처벌>

▹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참고).

※ 저작권 문제에 따른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저작권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2.3.1.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뒷광고 문제 없게 광고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1)].

※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I. 용어의 정의 1.).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용역을 포함. 이하 같음)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예를 들어,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2면 참조].

▪ 반대로,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1)].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2)].

▪ 반면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2)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3)]

▪ 따라서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등은 명확한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9면 참조).

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상황(예시)	아래의 표현을 포함하여 표시 가능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표현	▪ 광고 ▪ 유료광고 ▪ 상업광고 등
금전을 지급한 경우	▪ 광고비 지급 ▪ 수수료 지급 ▪ 금전적 지원 ▪ 제작비 지원/협찬 ▪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대여받은 경우	▪ ~협찬 ▪ ~무료 제공/대여 ▪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 ~할인 지원 ▪ ~할인혜택 제공 ▪ ~할인권 지원 등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적립금 지급 ▪ ~포인트 지급 등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 전속 모델 ▪ 모델 활동비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수익 일부 지급 ▪ 수익 배분 ▪ 공동구매 ▪ 직원리뷰 ▪ 직원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20면 참조]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파트너스’, ‘쇼핑커넥트’, ‘ 예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 ‘초청/초대’,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 ‘홍보 문구가 포함됨’,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상품/서비스 외에 경제적 대가 없이’ 등 ▪ 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등의 사정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20면 참조]

광고 표시 방법

Q.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광고'와 '상품 협찬' 중 어느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A. 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추천·보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협찬'은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 '광고'와 '상품 협찬' 표현 모두 적절한 표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천·보증의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상품 협찬"이라고 표시하거나,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았으면서 "상품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31면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외국어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 예를 들어, 한국어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보증을 외국어로 하였더라도, 국내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 등을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30면 참조].

▪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은 동일한 언어라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3) 참조].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I. 용어의 정의 2.).

동영상 광고의 적절한 표시(예시)

※ 유튜브·쇼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틱톡·클립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0면 참조]

동영상 광고의 부적절한 표시(예시)

※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댓글에 표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5면 참조]

▪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4) 참조].

▹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 광고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

광고임에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할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자신이 경험·체험한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다름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5면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 임시중지명령: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고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2.4.1.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충전 및 선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및 선물)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가를 결제(충전 및 선물)하기 이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 “사업자”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결제 및 과금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 “유료후원아이템”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결제수단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면, SOOP(舊 아프리카TV)(별풍선), 팝콘TV(팝콘), 유튜브(슈퍼챗) 등이 유료후원아이템에 해당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6조).

유료아이템 결제를 원하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1항).

▪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1조제2항).

유료아이템 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고지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2항).

▪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유료후원아이템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이의신청 사실 및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10조제3항).

유료아이템을 통한 불법 거래를 방지합니다.

▪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진행자 간에 유료후원아이템의 사적거래, 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충전한 유료후원아이템으로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3항).

3.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3.1.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3.1.1.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를 지은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비교

▪ (처벌)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 (처벌)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 (처벌 예외)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처벌

Q.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욕설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한 권리침해 시 대응방법과 조치

권리를 침해한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응방법과 조치 알아두기	
삭제요청	▪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임시조치 등	▪ (조치 현황 게시판 공시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 (임의의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 [①권리침해정보 심의, ②명예훼손 분쟁조정, ③이용자 정보제공청구, ④권리침해 상담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3.2.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3.2.1.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등 성범죄 유형

"음란 정보"란?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음란 정보"의 유통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
Q. 인터넷 개인방송에 금지하는 음란 정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보통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음란 정보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란?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어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비동의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촬영물 유포·재유포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74조제1항제2호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재유포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유포 협박 등)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324조제1항
유통·소비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제1항제5호,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반포등”이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참고).

※ “영상물등”이란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등”이란 편집·합성 또는 가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물등” 이란 편집물·합성물·가공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도 유통 금지되는 음란물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영하는 음란물을 성인들끼리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아니요. 음란물은 성인에게 허용된 표현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성인에게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기관의 성인등급의 심의를 받은 출판, 방송, 영상물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 인터넷 개인방송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 사이버 범죄 상담, 제보 및 신고 관련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신고 조회 및 성범죄 심의요청 관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http://www.kocsc.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신청

※ 디지털 성범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수사와 무료법률 연계지원 관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 신청

※ 사이버 성폭력 상담, 삭제 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지원 관련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http://cyber-lion.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대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부산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대구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광주	광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대전	대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YWCA 부설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산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세종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증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	경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강원	강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북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YWCA 부설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남	충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리가족)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남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경북	경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남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제주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YWCA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서귀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출처: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3.3.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3.3.1.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아동에 해당하는 나이

▪ 아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제작하지 않기

해로운 콘텐츠 유형

▪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

참고).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 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②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④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소지 또는 흡입 등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⑥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⑦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⑧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⑨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⑩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 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⑪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⑫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상생활이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⑬ 그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배분방식 등 설명하기

출연 여부 동의 필요

▪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1항 참고).

※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4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견 존중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2항 참고).

아동·청소년의 심야 또는 장시간 등 출연 제한하기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止揚)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④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